

도시관리계획(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
건설부고시 제220호(1989.05.04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71호(1996.06.2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‘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’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96호로 결정(변경)된 고시의 내용에 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사항이 있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7월 4일
강 서 구 청 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96호(2022.03.03.)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에서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고시를 하고자 함

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조서

-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: 변경없음
- ②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 - 1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: 변경
 - 가. 공공문화체육시설
 - (1) 학교

■ 학교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①	학교	특수학교	가양동 1477	8,528.3	증)0.3	8,528.6	서고시 제2022-96호 (2022.3.3)	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정정

■ 학교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①	학교 (특수학교)	· 면적 증가 A = 8,528.3㎡ → 8,528.6㎡ (증 0.3㎡)	·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정정

(2) 문화시설

■ 문화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①	문화시설	도서관	가양동1477 →1476-3	6,685.4	감)0.3	6,685.1	서고시 제2022-96호 (2022.3.3)	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정정

■ 문화시설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①	문화시설 (도서관)	· 지번변경 가양동 1477 → 1476-3 · 면적 감소 $A = 6,685.4\text{㎡} \rightarrow 6,685.1\text{㎡}$ (감 0.3㎡)	· 필지분할 및 합병에 따른 지번 변경 ·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정정

※ 이 외 계획내용은 기존과 동일

Ⅲ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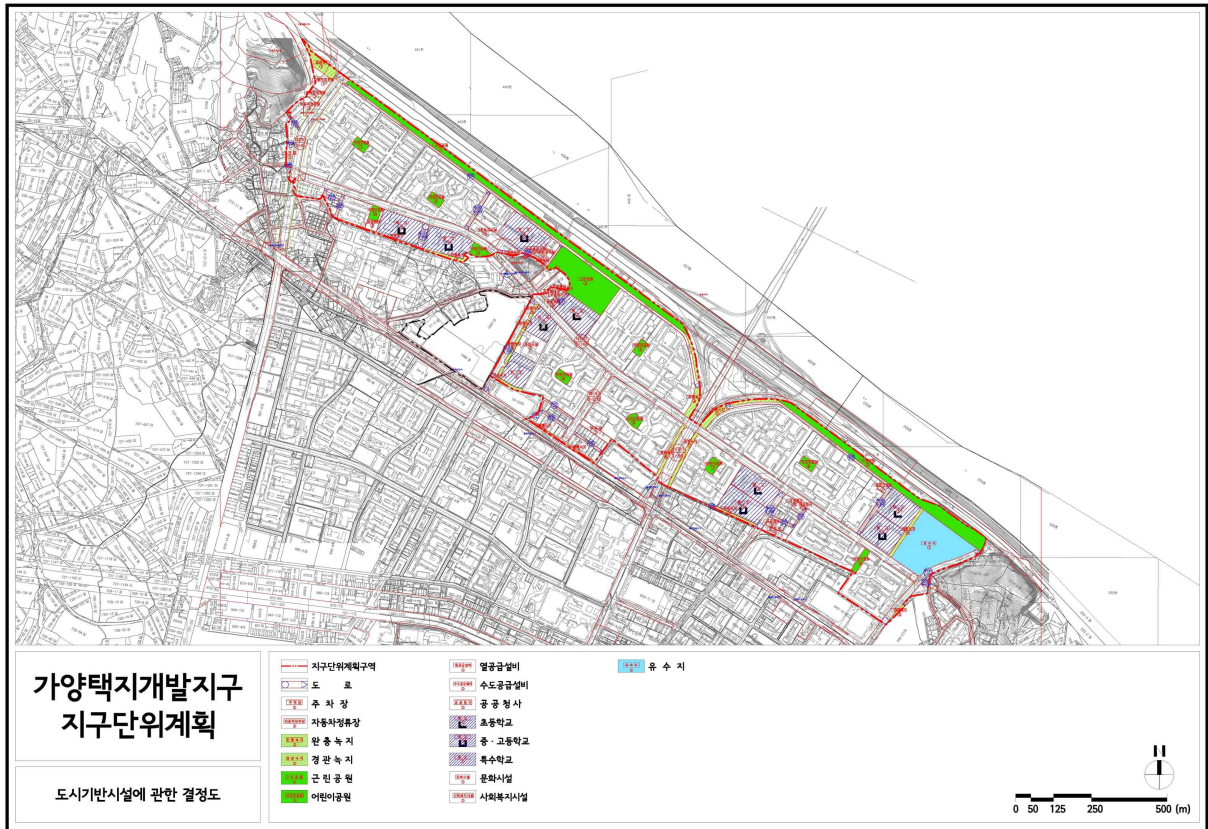
Ⅳ. 열람장소

○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(☎02-2600-6844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s://www.eum.go.kr>) 및 서울도시계획포털(<https://urban.seoul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■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



※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정정으로 도면 변경 없음.

■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- 상세도

